

사상가 별 중요 제시문 모음-지구촌 평화의 윤리

롤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결과적으로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취된 이후에는 심지어 현재의 질서 정연한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의 원조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조를 제공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들은 온정적 간섭주의를 발휘해서는 안 되고, 원조의 최종적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세심하게 계획된 방법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수특 179p)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유일한 또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들 간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는 점은 추정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그러한 원칙들은 명확히 규정된 목적, 목표 또는 차단점을 가지지 않는다. (수특 180p)

고통받는 사회로 하여금 그 사회의 정치 문화를 바꾸도록 원조하는 데 손쉬운 비결은 없다. 그것에 자금을 투여하는 것은 대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만민법에 의해서 배제된다. (수특 182p)

고통받는 사회는 정의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전통을 결핍하고 있다.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이러한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2020 9평 12번)

인권에 대한 강조는 무능한 정치체제나 국민의 복지에 무감각한 통치자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작용할 수 있으며 기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바뀌도록 돕는 데 있다. (2019 수능 17번)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적 의사 결정이 제도화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해외 원조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의 자유와 평등 확립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2019 6평 17번)

노직

소유 권리론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을 강제하여 이들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기부하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것

이다. (수특 179p)

최소 국가는 정당화되며, 그 이상의 포괄적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이 말의 주목할 만한 함축은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할 목적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특 182p)

싱어

롤스는 “만민법”에서 “질서 정연한(well-ordered)사회의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 즉 질서 정연하게 되는 데 필요한 정치적·문화적 전통과 인적 자본, 노하우 그리고 흔히 물질적·기술적 자원이 결핍된 사회를 도울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의무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원조의 요건에까지만 확장되는데, 이때 롤스가 의미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란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적인 정의 개념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도록 기획된 사회이다. 무엇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롤스는 각 사회가 절절한 문화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만약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지배된다면, 자원이 너무나 희소해서 질서 정연할 수 없는 사회는—한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그가 추측하기 때문이다. 이런 추측은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현재 없는 나라에 사는, 기아나 영양실조 또는 지금 당장 쉽게 막을 수 있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개인들의 곤경을 방치하기 때문이다. (수특 177p)

나는 강연을 하러 가는 도중 얇은 연못을 지나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게 했다. 그러다가 어린아이가 연못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 아이가 익사할지도 모를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어린나이를 구하려면 신발과 바지에 흙탕물을 뒤집어 써야 하고, 강연도 취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의 가치보다 작은 고려 사항들을 더 중시한다면 그것은 추한 일이 될 것이다. 나는 이런 가정을 일반화시켜, 우리 모두가 벅골의 난민들에 대해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특 178p)

나쁜 일을 막을 때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미를 가진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만 한다. 이 원칙은 절대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에도 적용된다. (수특 179p)

다른 조건이 모두 다 같다면, 국가가 자국민을 돌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된 나머지, 어떤 한 나라에서 부유한 한 쌍이 극장에 가느라 쓰는 돈이 다른 나라의 수많은 쌍들이 한 해 동안 먹고사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많다면, 사정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달러당 최대 효용을 얻는 방법을 추구하는 효율성 개념을 가지고 추론하는 것은 우리 동포에 대해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옹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효용의 크기로 볼 때 우리가 해외에 베풀 수 있는 선행의 양이 자국민을

돌볼 의무를 훨씬 압도한다고 주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수특 180p)

자신에게 얼마만큼 포기하도록 강요하느냐는, 우리가 막을 빈곤에 상당하는 도덕적 의미를 지닌 것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 있다. 공리주의자에게는 유행에 맞는 옷, 값비싼 저녁, 더 큰 집, 화려한 자동차 등은 극단적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수특 182p)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하면 질서 정연한 사회란 그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하고 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이다. 그런데 정의의 원칙을 자기 사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세계를 지금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기 전에 빈곤으로 죽어갈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2019 9평 3번)

칸트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비군은 항상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으로써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과 끝도 없는 군비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결국 군비의 과잉 지출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화보다는 오히려 단기간의 전쟁이 선택된다. (수특 178p)

공화제 체제는 법 개념이 순수한 원천에서 비롯된 그 근원의 순수성 이외에도 소망되고 있는 결과에 대한, 즉 영원한 평화에 대한 바람직한 전망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 또는 해서는 안 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때 국민은 자신의 신상에 다가올 전쟁의 재앙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나쁜 경기를 감행하는 데 무척 신중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반해 신민이 이런 의미의 국민이 아니라면 전쟁 선포를 결정한다는 것은 지극히 손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때 지배자는 국가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소유자이며, 전쟁으로 인해 식탁의 즐거움이나 사냥, 궁전의 이전, 궁전의 연회 등에 최소한의 지장조차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특 181p)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애가 아니라 권리에 관한 것이다. 환대란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그가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그를 적대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방인이 영속적인 체류권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방문의 권리요, 교제의 권리이다. 사람들은 지구 땅덩어리를 공동으로 소유함에 의해 그런 권리를 갖는다. (수특 182p)

전쟁의 완전 종식과 영구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의무입니다.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전쟁 수단의 금지와 국가 간 연맹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2019 6평 18번)

세계 평화는 받는 것이 아니라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평화란 모든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므로 그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용어의 중복일 따름이다.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이다. 국가들은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무력과 기만을 근절해 평화를 예비해야 한다. 공화국으로 전환한 계몽된 자유 국가들이 연방을 결성하고, 호혜적인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평화를 확정해야 한다. (2016 9평 18번)